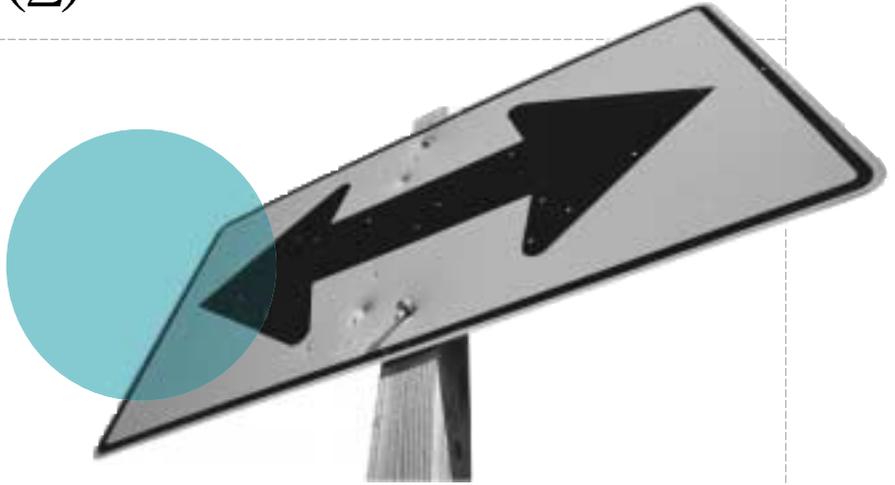


## 심사청구의 사전준비(2)

### 주식 관련 정비



**코** 스타 상장 심사를 청구하기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가 주식과 관련된 정비이다. 주식과 관련된 정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분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금의 규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지분 구조와 관련된 정비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지분 비율 확정**은 **심사청구 2년 전까지 확정** 먼저, 최대주주를 비롯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을 몇%로 상장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 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있을 것이고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있을 것이다.

상장할 자본금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이 자본금의 지분비율을 확정하는 작업은 사전적이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코스닥상장규정과 관련이 있다. 코스닥상장규정에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의 지분비율이 상장심사를 청구하는 날로부터 1년 전의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년을 D년이라고 할 때, 지분비율이 변동되어서는 안 되는 주주를 확정하는 작업이 D-2년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 동안 발행되었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도 지분비율변동금지기간 이전 혹은 이후로 시기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작업도 금지기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 또한 금지기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듯 상장 전의 지분구조를 확정하는 일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상장 자본금 규모 결정도 전략적으로** 또 하나의 주식 관련 정비사항으로 상장 자본금의 규모가 있다. 20억의 자본금으로 기업을 공개할 것인지, 50억의 자본금으로 기업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최소한 2년의 기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매출이 수백억원에 순이익이 수십억원이라 할지라도 1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상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당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코스닥상장규정과 관련된다. 코스닥상장규정에서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기간 동안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심사청구 2년 전 말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자본금 규모를 갖추는 작업을 2년 전부터 준비하여야 목적하는 상장 자본금의 규모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준 자본금의 규모를 2년 전에 갖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 1년 전의 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변동금지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장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 또한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지분비율변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라든지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활용할 수 있음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